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14183
----------	-------

제안연월일 : 2025. 11.

제안자 : 행정안전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의안명	대표발의	발의일자	심사경과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2209038)	2025. 3. 18.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25.7.01.) 상정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25.9.03.) 상정
	이성권의원 (2209054)	2025. 3. 18.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25.7.01.) 상정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25.9.03.) 상정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2025.9.03.)는 이상 2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7차 행정안전위원회(2025.9.25.)는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중 친족 채용시 신고주체를 채용특혜 부여 권한을 가진 “4급 이상의 공무원(정무직 포함)”으로 하고, 신고의 현실성을 고려하여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본인의 4촌 이내 혈족·인척, 배우자”를 대상으로 하며, 사무처 소속이 아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의 신고를 고려하여 신고처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하고, 친족 관계 등을 파악하기 위해 사무총장에 자료 요청 권한을 부여하되 그 범위를 “가족관계 등록전산정보” 등으로 명시하여 명확히 하고자 함.

또한, 사무총장은 매년 정기국회 전 선관위 전·현직공무원의 채용 및 승진현황을 소속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되, 전직자의 경우 4급 이상(정무직 포함)으로 퇴직한 지 3년 이내의 퇴직공직자를, 현직자의 경우 4급 이상의 공무원(정무직 포함)으로 함.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친족의 범위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본인의 4촌 이내의 혈족·인척 및 배우자”로 함(안 제15조의4제1항).

나. 사무총장은 신고 사실확인을 위해 법원행정처장 등에게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고, 법원행정처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함(안 제15조의4제2항).

다. 사무총장은 현재 선거관리위원회에 소속된 4급 이상 공무원 친족과 4급 이상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으로 퇴직하여 퇴직한지 3년이 되지 않은 퇴직공무원 친족의 채용 및 승진 현황을 매년 정기국회 개최 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안 제15조의5).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3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사무총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공무원 채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의4 및 제15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4(친족 채용사실의 신고 등) ①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4급 이상(정무직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의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친족”이라 한다)이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을 거쳐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채용된 때에는 지체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사무총장은 신고받은 사항을 사실 확인 등을 거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1. 본인의 4촌 이내의 혈족·인척
2. 배우자

② 사무총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의 사실 확인을 위해 법원행정처장 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 등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법원행정처장 또는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신고 및 공개의 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의5(국회 보고) 사무총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채용된 경우 그 채용 사실 및 채용 이후 승진 현황을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현재 선거관리위원회에 소속된 4급 이상(정무직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의 공무원의 친족
2. 4급 이상(정무직을 포함하며,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 후 같은 법 제74조의2에 따라 명예퇴직한 사람의 경우 특별승진임용 전 직급이 4급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의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퇴직일로부터 3년이 되지 않은 퇴직공직자의 친족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친족 채용사실의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4급 이상(정무직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의 공무원은 이 법 시행 전에 자신의 친족이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거쳐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채용된 경우에는 제15조의4제1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第15條의3(公務員의 採用등) ① · ② (생략) <u><신설></u> <u><신설></u>	第15條의3(公務員의 採用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사무총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u> <u>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공무원</u> <u>채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지</u> <u>도·감독하여야 하며, 그 결과</u> <u>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u> <u>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u> <u>한다.</u> 제15조의4(친족 채용사실의 신고 등) ① <u>선거관리위원회 소속 4</u> <u>급 이상(정무직을 포함한다) 또</u> <u>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의 공무</u> <u>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u> <u>“친족”이라 한다)이 「국가공무</u> <u>원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경</u> <u>력경쟁채용시험등(이하 “경력</u> <u>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을</u> <u>거쳐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u> <u>무원으로 채용된 때에는 지체</u> <u>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그</u> <u>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사무</u>

<신 설>

총장은 신고받은 사항을 사실 확인 등을 거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1. 본인의 4촌 이내의 혈족·인척

2. 배우자

② 사무총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의 사실 확인을 위해 법원행정처장 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 등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법원행정처장 또는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신고 및 공개의 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의5(국회 보고) 사무총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채용된 경우 그 채용 사실 및
채용 이후 승진 현황을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
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현재 선거관리위원회에 소속
된 4급 이상(정무직을 포함한
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의 공무원의 친족

2. 4급 이상(정무직을 포함하
며, 「국가공무원법」 제40조
의4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
진임용 후 같은 법 제74조의2
에 따라 명예퇴직한 사람의
경우 특별승진임용 전 직급이
4급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의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퇴직일
로부터 3년이 되지 않은 퇴직
공직자의 친족